

1. 개정이유

LNG 운반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을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면허발급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해기사 면허 발급서류 간소화(안 제18조제1항)

선박직원으로 승무하지 않는 육상해기사 등이 면허 갱신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서를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갱신 지원.

나.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 완화(안 별표1)

LNG 운반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의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에서 승무경력 조항을 삭제하여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화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지 않는 사람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제20조제3항 중 “영 제4조제1항제4호”를 “영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”로, “통보하여야”를 “통보해야”로, “하여야 한다”를 “해야 한다”로 한다.

별표 1의 보 수 교 육의 직무교육의 유조선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란 중 “이수하고, 3개월 이상의 유조선 승무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승무기간 중 3회 이상 적·양하 작업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”를 “이수하고,”로 하고, 같은 란의 액화가스 탱커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란 중 “이수하고, 3개월 이상의 액화가스탱커 승무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승무기간 중 3회 이상 적·양하 작업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”를 “이수하고,”로 하며, 같은 란의 케미컬 탱커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란 중 “이수하고, 3개월 이상의 케미컬탱커 승무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승무기간 중 3회 이상 적·양하 작업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”를 “이수하고,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3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)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면허취소	-	-
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	---

별지 제9호서식 제3쪽 중 “(No)□”를 각각 “(No)□, 해당 없음(N/A)□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면허의 갱신) ①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<u>제출하여야</u> 한다.	제18조(면허의 갱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해야</u>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선원법」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. 다만,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.	4.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.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라.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지 않는 사람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</u>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0조(행정처분의 기준등) ①·② (생략)	제20조(행정처분의 기준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해양경찰청장은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 따라 동력수상레저	③ ----- -----

기구조종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<u>영 제4조제1항제4호</u>에 따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<u>통보하여야</u> 하며,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<u>하여야 한다</u>.	----- ----- <u>영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통보해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야 한다</u>.
--	--